강원관광대학 학생상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학생 상벌의 적절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 상

제 2 조 (포상) 학칙 제 49조에 의거한 포상은 학장이 이를 수여하며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 3 조 (구분) 포상은 성적부문과 공로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성적부문은 전체수석과 학과수석이 있으며, 공로부문에는 공로상이 있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외의 표창을 할 수 있다.

1. 성적부문
   가. 전체수석 : 전 학기 학업성적이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자로 하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학과수석 : 전 학기 학업성적이 해당과 에서 가장 우수한 자로 정한다.
2. 공로부문
   가. 공로상 : 재학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자로 정한다.

제 3 장 징 계

제 4 조 학칙 제 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징계한다.

1. 근신 : 근신은 3일이상 7일이내로 하되 등교수업과 특별지도를 아울러 한다.
2. 정학
   가. 유기정학 : 3일 이상 15일 이내로 수업을 정지하고 이 기간 특별지도를 받는다.
   나. 무기정학 :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업을 정지하고 특별지도를 받으며 처벌은 최소한 15일이 경과한 뒤에 징계 할 수 있다.

제 5 조 (근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자로서 제 6조 및 제 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실내 흡연자 및 학내 환경을 더럽힌 자
3.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4. 학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한 자
5. 학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6. 허가를 얻은 광고, 인쇄물 등을 학내 외 지정 또는 지시하지 않은 장소에 붙이거나 배부한 자
7. 태만하여 학업이 불량한 자
8.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 6 조 (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 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자
2. 학내에서 음주한자 및 음주하고 등교한자
3.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자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계획한자
5. 단체행사시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대학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6. 학외에서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자
7. 학생증을 이용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8.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자

제 7 조 (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 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자
2. 타인의 물품이나 금품을 절취한자
3. 허가없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유인물을 배포한자 또는 금품을 징수한 자
4.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자
5. 집단폭행을 주동하거나 이에 호응한자
6. 제증명 또는 서류를 변조 또는 위조한자
7. 야간에 학내에서 음주하고 소란 및 폭행한자
8.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자

제 8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단, 휴학생도 이 조항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제 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자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 또는 선동한자
3.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케 한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중상해 및 치명적 상처를 입힌자
5. 학외에서 본 대학 명예를 심히 훼손한자
6. 교직원을 폭언·폭행한자
7. 학내에 폭력단체를 조직하거나 유도한자
8.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동조한자
9. 고의로 학교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류를 탈취한자
10. 학생회비 및 공금을 유용한자
11. 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된자
12. 불량배와 모의 또는 선동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
13. 타인의 금품이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자
14. 학교의 문서나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한자
15. 고의로 본 대학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자
16.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내분열을 선동하는자
17.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및 학칙 제 41조에 위배한자

제 9 조 (징계절차)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학생지원처장은 다음 1호에서 5호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비위사실 진술서 1부
3. 징계혐의자 명단 1부
4. 징계사유 설명서 1부
5. 징계 의결서 1부

제 10 조 (징계의 결정)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근신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신청으로 학과장을 경유 학생지원처장이 처벌 할 수 있다.

제 11 조 (학적부 등재) 징계자에 대한 징계사실 일체는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 12 조 (권리상실) 징계조항에 저촉되어 처벌받은 학생은 자치활동이나 기 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징계일로부터 상실되며,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의 제증명 발급시 반드시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처벌의 감면) 학생지원처장은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선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4 조 (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징계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학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 할 수 있다.

제 15 조 (통보)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지원처장은 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 학장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운영) 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포상 학생은 미행을 선양하기 위해 이를 공고한다.
2. 학생에 대하여는 분담지도교수가 연락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교내 및 기숙사에 게시하며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3. 학생지원처장, 학과장, 분담지도교수는 처벌학생을 선도 감독하여 속히 개과 하도록 노력하되 정학처벌 이상을 징계받은자에게는 반성문제출, 거처의지정 또는 출입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4. 학생지원처장은 유기정학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인정 할 때에는 수업을 정지시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해벌) 해벌처리는 분담지도교수가 보호자 연서로서 학생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케하며 근신, 유기정학은 만료일로부터 해벌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비밀유지) 이 규정에 관한 사항은 비밀・공정・정확 및 신속을 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학생상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정관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행정부서 명칭은 본 규정이 개정된 시점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